

시설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강릉 경포대 안전시설 설치공사
-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 다. 공사현장: 강릉시 경포로 365
- 라. 공사개요: 강릉 경포대 안전시설 설치공사 1식
(설계도서 사전열람: 문화유산과 033-640-5119)

마. 추정금액: 31,550,000원

추정가격: 28,681,818원 부가세: 2,868,182원 관급자재대: 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31,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관급자재는 도급자관급 0원, 관급자관급 0원입니다.

바.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9. 30.(수) 10:00

사.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6.(화) 10:00

아. 개찰일시 : 2026. 10. 6.(화) 11:00

자. 개찰장소 : 강릉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강릉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

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견적 및 전자견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 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나 기타사유 등이 발생 시 종이문서계약을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하도급지킴이 사용 관련사항

- 가.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또는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공사)인 경우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고정계좌 등)를 착공 시 발주부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및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 변경없이 계약부서에 지급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가. 행정자치부 예규 (최근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강릉시와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강릉시 문화유산과(033-640-5119)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 관련 문의처: 강릉시 회계과 (☎033-640-5470)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며, 입찰금액(산출 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원)	301,070	397,798	39,560	0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230,571	0	0	968,999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견적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 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관련법령, 관련회계예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제출 참가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견적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해당)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강릉시 분임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 향응 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강릉시 감사관실)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강릉시 통합이행서약서로 갈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계약상대자(확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